

2003 主要業務報告

2003. 6

建設管理課

報 告 順 序

- 一 般 現 況

- 上半期 主要業務推進實績

- 下半期 主要業務推進計劃

一 般 現 況

□ 인 력

구분	총원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기능직	지도원	검침원
정원	29	1	1	3	5	7	1	11		
현원	55	1	1	4	12	9	1	12	12	3
과부족	+26			+1	+7	+2		+1	+12	+3

□ 조 직

- 건설 행정 담당 - 공공용지의 점용허가 및 전문건설업 관리 등
- 가로 정비 담당 - 가로상 장애물정비관리 및 도로일시점용허가 등
- 광고물관리담당 -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처리 등
- 불법광고물정비팀 - 불법광고물 정비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

□ 공 공 용 지

○ 관 리 현 황 ----- 총 5,430 필지 12.41km²

- 소유별 : 국유지 7.36km², 사유지 4.28km², 구유지 0.77km²
- 지목별 : 도 로 3.86km², 하 천 8.01km², 구 거 0.54km²

○ 점 용 현 황 ----- 2,441 건, 51,926m²

- 도 로 : 2,268건 47,394m²
- 하 천 : 63건 1,823m²
- 구 거 : 110건 2,709m²

○ 점 용 유 형 : 차량출입시설, 사설안내표지판, 에스양카, 지하매설물 등

□ 전문 건설업체 -----631개업체(24업종 1,076개등록)

□ 골재 채취업체-----13개업체(골재채취업 등 4업종 19개등록)

□ 가로 시설물 ----- 1,244개소

가 로 시 설 물(1,242)				노 점 상 단속초소	하 천 감시초소
가로판매대	교통카드판매대	구두수선대	통합배포대		
86	43	113	1,000	1	1

□ 가로정비 및 광고물 단속반 운영 ---5개반 22명

- 가로정비단속반 A조(6) : 영등포로·대방로기준 한강방향
(오목교⇔대방역)
- 가로정비단속반 B조(6) : 영등포로·대방로를 기준 한강반대 방향
(오목교⇔대방역)
- 가로정비단속반 C조(4) : 일시도로점용허가 사후관리,육교사용허가
사후관리, 고가도로 하부공간 사후관리,
보도영업시설물 관리보조
- 광고물정비반 A조(3) : 여의도동, 당산동, 양평동, 문래동지역
- 광고물정비반 B조(3) : 영등포동, 신길동, 도림동, 대림동지역

□ 옥외 광고물 관리현황

(단위:개)

구 분	계	옥 상	지 주	들 출	가로형	기 타
계	10,963	69	504	5,928	3,412	1,050

□ 주요장비·시설현황

- 차량 6대 (1t, 포터 더블캡), 핸드폰 8대, 무전기 8대
- 수거물품 보관창고
 - 양화동17 - 4외 1필지 (하천부지 380평, 가건물 50평)
 - 문래동3가 55 - 6 (공공용지 1,000평, 건물 254평)

上半期 主要業務推進實績

1. 도로 등 공공용지 관리(6.30현재)

점용료 징수실적

(단위 : 천원)

구 분	목 표 (A)	조 정 (B)	징 수 (C)	진 도 율(%)		
				A:C	A:B	B:C
계	3,029,680	2,813,638	2,561,654	84.5	92.8	91.0
도로점용료	2,683,964	2,465,240	2,346,507	87.4	91.8	95.1
하천점용료	118,702	128,732	128,681	108.4	108.4	99.9
과 태 료	26,000	170,350	37,150	142.8	655.1	21.8
임대 수입	18,032	-	-	-	-	-
과년도수입	182,962	49,316	49,316	26.9	26.9	100.0

(시징수교부금 예산액 471,650천원 별도)

무단 도로점용행위 적발조치 : 186건 163,043천원 변상금부과

체납 세외수입 정리 조치사항

○ 전국 직장조회 : 2회 2,590건 ○ 부동산 압류 : 11건 46,550천원

○ 차 량 압 류 : 55건 34,902천원 ○ 결 손 처 분 : 1,114건 582,682천원

도로점용 민원처리 현황(6.30현재)

(단위 : 건)

총 계	도 로 점 용 허 가					도 로 일시점용 허 가	허가사항 명의변경
	계	차량출입 시 설	사실안내 표 지 판	어 스 양 카	지 하 매설물		
329	265	242	6	2	15	53	11

2. 전문건설업 갱신신고 접수처리

건설산업기본법령이 일부 개정(2002. 9.18)됨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등록기준 사항 신고를 안내하여 갱신토록 하고, 일부 미신고 업체에 대하여는 추가로 신고토록 안내하여 전문건설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□ 법적근거

-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(건설업의 등록 등)
- 동법시행령 제12조의2(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)

□ 주요내용

- 건설업자는 3년마다 등록기준 관련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
- 법령개정일 (2002. 9. 18)기준으로
 - 2000. 3. 18이전 등록한 업체 ⇒ 2003. 4. 17까지 최초신고
 - 2000. 3. 18이후 등록한 업체 ⇒ 3년 경과후 30일 이내 신고

□ 갱신신고 접수 및 처리 결과

(단위: 건)

관리대상업체	금회등록대상 (4.17기준)	접수 및 갱신처리	미신고	기타 (전출 및 반납)
631	480	357	104	19

□ 향후계획

- 시정명령 불이행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
- 갱신처리된 업체중 행정처분 대상업체(27개소)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 별표6의 기준에 해당되는 기간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
- 2003.7.1 이후 갱신신고 대상업체 - 안내 접수처리

3. 가로정비 및 관리(6.30현재)

노점상 단속 및 정비

(단위 : 건)

합 계	단 속 유 형 별			
	포장마차	손 수 레	좌 판	차 량 영 업
14,375	406	6,983	3,651	3,335

※ 강제수거 : 3,419건 (포장마차 21, 손수레 327, 가스통 239, 기타 2,832)

※ 여의도 벚꽃행사 정비실시(4.1~4.15) : 1,389건(수거 514, 이동조치 875)

조광·영일시장 단속 및 정비실적

(단위 : 건)

노 점 상					노 상 적 처 물			파라솔 차양막 핸드카	물 품 수 거
계	포 장 마 차	손수레	좌판	차 량 노 점	계	상 품 적 처	시설물 제 거		
1,007	3	68	652	284	15,991	14,119	0	1,825	47

행정 조치 실적

(단위:천원)

변 상 금		과 태 료		고 발
건 수	금 액	건 수	금 액	
519	105,728	487	73,050	52

노점상 정비 홍보추진실적

- 한강케이블 방영 : 2회 ○ 리후렛 제작 배포 : 3,000매
- 구소식지 게재 : 3회(2,3,5월) ○ 구 홈페이지게재 : 공지사항 등재

가로정비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실적

(단위:건)

계	진 정 민 원	전 화 민 원	인 터넷 민 원	모 니터 요 원	견 문 사 항	환 경 순 찰	신문고
1,144	19	522	78	0	45	480	0

4. 광고물 관리

옥외광고물 표시허가(신고) 처리 현황 (단위 : 건)

계	옥 상	지 주	돌 출	가 로 세 로	현수막	공 연	기 타
2,662	9	54	677	421	864	133	504

도로공간사용료 부과실적 (단위 : 건/천원)

계		시 비		구 비	
건 수	금 액	건 수	금 액	건 수	금 액
3621	387,002	1,086	154,800	2,535	232,202

광고물 심의 위원회 처리실적

- 본심의(대형) : 5회 43건 심의(원안가결 32, 조건부가결 7, 권고 3, 부결 1)
- 소심의(기타) : 25회 629건 심의(원안가결 531, 조건부가결 88, 부결 10)

옥외광고업자 정비 실적

- 옥외광고 보수교육 미이수자 과태료처분
 - 대 상 : 2002년 옥외광고업 보수교육 미 이수자 22명
 - 조치내용 : 대상업자 1인당 25만원씩 총 550만원 부과조치('03.4.10)
- 옥외광고업 무단 폐·휴업후 변경신고 미 이행자 조치
 - 대 상 : 변경신고 미 이행자 146명
 - 조치내용 : 36건 자진변경신고(폐업포함),
110건 영업정지(1개월) 처분통지('03.6.26)

5. 불법광고물 정비(6.30현재)

불법 고정광고물 정비

구 분	정 비(건)	이행강제금 부과		비 고
		건	금액(천원)	
2003년	3,217	63	66,615	
2002년	10,995	38	22,100	

불법 유동광고물 정비

구 분	정 비				과태료부과	
	계	입간판	현수막	에어 라이트	건수	금액 (천원)
2003년	13,315	326	13,365	33	96	44,350
2002년	38,201	7,138	31,025	38	370	76,243

학교주변 클린존 지정 관리(정비)

- 정비지역 : 관내 16개교 초,중등 학교주변(초10, 중4, 고2)
- 정비(단속) 인력
 - 공공근로 : 1일 8명 연210명
 - 구기동반 : 1일 6명 연180명
- 정비내용 : 음란전단 등 불법광고물 제거
- 관리실적
 - 예방활동
 - 홍보 현수막 설치 : 16개 학교주변 28개소
 - 벽보 부착 방지판 설치 : 전신주 등 492개소
 - 정비사항 : 벽보,전단, 프랑카드 등 7,300건
 - 행정처분: 과태료 17건 11,000천원 , 고발 4건

下半期 主要業務推進計劃

I. 건설행정 관리기능 유지 강화

① 도로 등 공공용지 무단점유행위 일상 점검 확행(계속)

공공용지를 시공자, 점포주 등이 무단점유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체계적인 일상점검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공용지 본래 기능을 확보하고 상습 점유자에 대하여는 변상금 등을 부과하여 세외수입 증대도모

□ 점검 대상

- 공사장 : 허가면적, 기간초과사용 및 도로 무단점용 행위
- 점포주변 : 상품과다 적치, 고정시설물설치, 노상작업 행위 등
- 도로, 하천, 구거부지 등에 대한 주택·점포 등의 계속점유 행위

□ 점검 방법

- 기동단속반이 가로환경순찰 및 정비 시 일상점검
- 유관부서의 허가 통보 사항을 중심으로 정기점검
- 구거부지등 공공용지 무단사용에 대한 숨은 재원 적극발굴
- 증거확보를 위해 사진촬영 및 행위자의 자인서 징구

□ 무단점유자 조치

- 변상금 및 과태료부과
- 고질·상습자는 도로법에 의거 고발

② 과년도 체납금 정리 및 세외수입 증대 도모

□ 분야별 체납 정리목표

- 체납액(구비) : 1,028,114천원(2003.6.30현재)
- 정리목표 : 182,962(17.79%)천원

구분	체납액 (천원)	정리목표	징수	정리율(%)
계	1,028,114	182,962	49,172	26.88
도로점용료	734,181	164,533	36,303	22.06
하천점용료	91,825	9,013	12,139	134.68
도로법과태료	112,102	4,711	730	15.50
건설업과태료	90,006	4,705	-	0

□ 중점 정리대책

- 체납 징수 독려반 년중 지속운영
 - 구성 : 1개반 4명
 - 건별 현장조사 및 주민등록 실사를 통해 소재파악 확인
 - 체납자 면담실시 및 독려상황 일일보고
 - 고질·상습적 체납자에 대하여 집중관리
- 체납자 재산 조회 및 재산 소유자 행정처분 강화
 - 전국재산·직장조회 : 년 6회 이상(상반기 - 2회실시)
 - 재산 소유자 압류 : 부동산·차량·급여 압류
(상반기 조치 - 부동산압류 11건 차량압류 55건)
- 시효 및 불납결손
 - 5년경과 체납자 및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인 자

Ⅱ. 가로환경 정비기능 유지 강화

Ⅰ) 노점상·노상적치물 집중정비(계속)

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불편을 주고 있는 노점을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정비·감축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함

□ 주요노선별 노점상 현황 --2,308개소

- 노점상(574) : 양평로(155), 영등포로(137), 여의도(85), 기타(197)
- 적치물(1,734) : 영등포로(208), 경인로(168), 영일·조광시장 및 재래시장 주변 등(1,358)

□ 중점 정비 대상

- 시민불편노점(버스정류장, 횡단보도, 육교, 보차도, 지하철역 부근, 유치원·초·중등학교주변 등)
- 민원다발노점(시민불편 신고, 인터넷 신고, 순찰 지적사항 등)

□ 정비 방법

- 노점(포장마차)이용 자제 등의 홍보물제작 배부 등 예방활동을 강화
 - 지역언론매체(신문, 한강케이블 등), 반상회보, 인터넷 등 활용
 - 유관기관, 단체 및 초·중등학교를 통한 홍보물 배포
- 버스정거장 주변등 절대금지구역내의 노점행위를 집중반복 단속
- 야간·새벽 및 공휴일 단속 강화(월4회 → 8회)로 마찰 최소화
- 생계형 노점은 계도 위주로 정비하되 불응시 강제수거
- 기업형 독점적노점(포장마차)은 강제수거 위주로 단속
- 고질·상습 위반자는 변상금 부과 및 고발 병행조치

② 조광·영일시장 주변 정비(계속)

보·차도상의 만성적인 물품적치, 불법주차,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주민 불편 요인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보행로 확보 및 차량소통의 원활화 도모

□ 현 황

- 구 간 : 농협 영등포지점 ~ 영등포 고가 ~ 진로아파트
- 대 상 : 253개 점포 (조광147, 영일106)

□ 중점 정비대상

- 보·차도상 물품적치, 파라솔, 이중차양막 등 설치행위
- 차도상 핸드카, 손수레 방치행위
- 불법 주·정차 및 보도상 상행위 등

□ 정 비 방 법

- 영등포 청과등 6개 대표와 간담회 개최 - 년2회 이상(상반기 1회실시)
- 각 점포에 자율정비 참여촉구 구청장 공한문 발송(상반기 2회실시)
- 기동단속반(3개조 16명) 및 용역관리 인력(1일10내외) 집중 투입
- 유관부서 합동·공조정비 체제강화(경찰, 교통지도, 청소과)
 - ※ 『강서농산물도매시장』 개설(예정)에 따른 상인 입주시(03.10~04.6) 이전지역 관리철저

□ 불법행위자 행정 조치

- 보·차도상의 파라솔, 바레트 등 고정시설물 강제수거
- 상습·고질적인 점포주는 과태료, 변상금 부과 및 고발병행

③ 보도상 영업시설물 중점 관리(계속)

가로판매대 등 시설물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실시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질서있는 거리환경을 조성

점검시기

- 정기점검 : 년 2회 이상 (상·하반기)
- 수시점검 : 월 2회(첫째·셋째주)

중점 점검 사항

- 전대·전매, 허가장소 임의변경, 시설물 구조변경 여부
- 허가 면적 이외 장소에 상품 및 기타 물건적치·판매행위
- 음식물 조리, 가스사용, 금지품목 판매행위 등

위반자 행정조치

- 허가조건 위반 등의 미시정 시설물 행정처분(조치중 18건)
- 허가 취소된 영업시설물의 철거 및 변상금 부과
- 제소전 화해 불 성립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조치 강화
 - ※ 상반기조치 (변상금 : 233건 29,710천원, 과태료 : 233건 69,350천원)

법원제소전 화해 추진현황

(단위:개소)

구 분	계	가로판매대	구두수선대	교통카드판매대	비 고
설치대수	242	86	113	43	
성 립	9		5	4	
불 성 립	127	86	2	39	제소전 화해조서 재접수중
심리진행	106		106		'03.7.16 법원 심리 예정

4] 가로정비 취약지역 용역관리(계속)

단속 정비요구 민원은 계속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상인들의 조직적이고 집단적 반발이 심화되고 있어 용역업체의 위탁관리를 통해 정비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·정비를 강화하여 질서있는 거리를 조성

□ 인력현황

- 현장 단속공무원(17명) : 기능직6명, 지도원11명
- ※ 지도원은 모두 정원의 현원관리로 퇴직시 충원이 불가

□ 추진개요

- 용역인력 운용

구 분	계	상반기(집행중)	하반기(예정)
기 간	년 중	4.3 ~ 7. 31	8. 1 ~ 12. 31
용역일수	190일	90일 이내	100일 이내
인 력	1,900명	1일10명 연900명	1일10명 연1,000명
소 요 액	156,032천원	68,046천원	87,986천원

○ 정비지역

- 집중상설정비 : 조광·영일시장 주변 등
- 일반수시정비 : 영등포 전역 및 취약 지역

○ 추진방법

- 조광·영일시장 및 고질적 민원다발지역의 정비(강제수거등)에 집중적·지속적으로 배치하되 상황에 따라 신속적으로 운영

Ⅲ. 광고물 관리 및 정비 지속 추진

Ⅰ 광고물 수준향상 및 불법 발생요인 개선방안 강구

대형·난립으로 도시경관을 심각하게 해치는 옥외광고물을 개선하기 위해
광고업자 교육 및 관리를 통하여 광고물 수준을 한층 더 향상코자 함

□ 옥외 광고업자 정기교육 실시

- 교육 대상 : 234명('03. 6.16 현재)
- 교육 시기 : 8월~9월중
- 교육 방법 : 한국교육사업협회에 위탁교육
- 교육 내용 : 광고물 관련 법규 및 광고업자 준수사항 등
- 불참자 조치 : 과태료 부과 등 조치 후 보수교육 실시

□ 옥외 광고업자 일제정비

- 정비대상 : 110명(무단 장소이전, 휴·폐업자)
 - ※ 상반기 옥외광고업자 일제정비시 확인된 정비대상자임
- 단계별 정비 추진
 - 1차정비 (7월중) : 영업정지 1월 처분예정
 - 2차정비 (8월중) : 영업정지 1~3월 처분예정
 - 3차정비(11월중) : 영업 폐쇄조치 예정

□ 현수막지정게시대 안전점검 및 보수

- 점검대상 : 지정게시대 29개소(130면)
- 점검방법 : 안전점검 전문기관(한국광고사협회)에 의뢰 조사
- 점검기간 : 2003. 6.25 ~ 6.30
- 보수일정 : 2003. 7. 1 ~ 7.10
- 사후관리 : 태풍 등으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여부 수시 확인 조치

2]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(계속)

2002년도 4차선 이상 정비완료된 노선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2003년도에 신규 선정된 2차선 노선을 정비코자 함

정비대상 및 기준

- 유 형 : 가로형, 돌출형, 세로형, 지주형, 창문형
- 기 준 : 무허가(신고)사항, 표시방법 위반 사항등

정비노선 및 예상 물량- 3,750건

- 기 정비노선(사후관리) : 30개노선 2,700건
 - 2001년도 정비노선 : 13개노선 1,000건
 - 2002년도 정비노선 : 17개노선 1,700건
- 2003년 신규 노선 : 2차선 7개노선 1,050건

정비방법

- 노선별 담당자 지정 관리 및 정비
- 사전 충분한 안내 및 홍보로 자율 정비유도
- 신규 2차선의 자율 정비 동의 업소는 구에서 철거지원
- 미정비 업소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

- 철거용역비 : 년 65,000천원(22,000원×3,000건)
- 상반기 집행액 : 25,000천원

[3]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

지속적이고 입체적 단속방법에 의해 입간판, 에어라이트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으나, 수시 발생하는 벽보·현수막에 대하여는 지속정비 코자함

- 정비대상 : 입간판,현수막,에어라이트,벽보,전단 등
- 중점 정비 사항
 - 대리운전 현수막수거 행정처분(고발 및 과태료부과 병행)
 - 음란퇴폐전단 배포자 현장 단속
- 정비방법
 - 구 기동반(2개반6명)의 담당노선별 순찰 정비단속
 - 공공근로(10명)활용 취약지역 벽보 등 지속 제거
 - 주 2회 새벽 및 야간 특별 단속 지속 실시
- 위법행위의 예방 및 억제 조치
 - 현 수거(제거)방법과 병행 과태료등 행정처분 강화
 - 미검인 공공현수막의 최소화를 위한 사전홍보 및 사전 검인제 확행

[4] 학교주변 클린존 지속 관리(정비)

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성 불법 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학교 환경 및 보행 환경을 개선코자 함

- 정בי지역 : 관내 16개교 학교주변 통학노선
- 정비내용 : 음란전단 등 불법광고물 제거
- 관리(정비)기간 : 가시적으로 정화될 때까지
- 관리(정비)방법
 - 학생봉사활동 참여유도(7월중)
 - 자기학교주변의 정화를 위한 자발적 참여로 효과증대 예상
 - 구기동반(6명) 및 공공근로의 인력으로 정비 병행
 - 청소년 유해광고물 배포자 현장 단속(잠복근무 - 방학중2회)